

제420회 임시회  
'24. 9. 4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8월 23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6일

3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 내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·가정 양립 및 양육 친화 사회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○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정책목표, 재정 조달 방안, 사업 활성화 방안 등 포함

○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비용 지원, 교육·훈련,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등 포함

○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·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○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규정을 명시함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자치법규 상 근거를 마련하고,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충청북도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3년 기준 53.5%<sup>3)</sup>로, 이는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이며,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약 5번째의 높은 수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음.

여기에, 아이돌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도내 영유아 및 아동은 총 142,390명으로,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, 질병감염 아동 돌봄, 기관연계 돌봄 등 4개 사업이 11개 시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.

### <참고 1> 돌봄서비스 종류 및 이용 기준

돌봄서비스 종류	이용 기준
시간제 돌봄	- 대상 :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 - 이용요금 : (기본형) 11,630원 / 시간 (종합형) 15,110원 / 시간 ·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·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

3) ‘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-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’ (통계청, 24.6.18.)

- 국내 전체 맞벌이 가구 611만 5,000가구(48.2%), 충북 맞벌이 가구 22만 3,000가구(53.5%)

영아 종일제 돌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영아</li> <li>- 이용요금 : 11,630원 / 시간</li> <li>·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~200시간 이내</li> <li>· 1회 3시간 이상 신청</li> </ul>
질병감염 아동 돌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12세 이하 아동 (병원이용 동행, 재가돌봄 제공)</li> <li>- 이용요금 : (기본형) 13,950원 / 시간</li> <li>·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</li> </ul>
기관연계 돌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12세 이하 기관이용 아동 ( 아동돌봄수요 증가 특정시간대 보조인력 지원)</li> <li>- 이용요금 : 18,600원 / 시간</li> <li>· 1회 2시간 이상 신청</li> </ul>

○ 특히,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한 누적 아동 수는 16,492명에 달하고 있으나, 도내 사업기관 소속으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75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.

**<참고 2>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이용 아동수 현황**  
(24년 7월 말 기준)

(단위: 명)

실이용 아동수(누적)				
시간제	영아 종일제	질병 감염 아동	기관 연계	합계
15,640	196	329	327	16,492

**<참고 3> 충북 도내 아이돌보미 현황 (24년 7월 말 기준)**

(단위 : 명)

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750	238	177	128	18	26	18	32	54	24	26	9

- 이렇게 사업 대상 아동 대비 아이돌봄미 수 부족과 도내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시간 등 근무 조건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, 돌봄 지원이 필요한 도내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, 제4조(국가 등의 지원), 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, 제26조(비용의 보조) 및 제34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서비스 비용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 적합성도 타당함.
- 이에, 본 조례안을 통해 아이돌봄미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의 질이 향상되고, 안정적인 지원으로 아이돌봄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건강하고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,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. (안 제1조)
  - 본 조례안은 맞벌이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, 아이의 복지증진 및 ‘일과 가정’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,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. (안 제2조)

-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상 용어의 정의와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, 적절하다고 보여짐.

○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
- 해당 조항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한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정으로,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- 특히, 제2항에서 규정한 ‘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’ 는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미스매칭 및 비용의 부담, 시간의 부족 등이 우려되고 단순 돌봄뿐만 아니라 식사 및 학습 지원, 병원 입원시 돌봄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.

<참고 4>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○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
-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.

이는 지원계획에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과제 및 방법, 자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 급속히 변화 및 증가하고 있는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수요 및 요구에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.

○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. (안 제5조)

-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,

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,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과 함께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포함해 명시함.

- 이와 함께, 제2항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, 지역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을 명시함. (안 제6조)
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명시한 것으로, 지난 해 5월 개소한 충청북도

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운영, 시·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,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등 지역 아이돌봄서비스 기능 전반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음.

○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

(안 제7조~제8조)

- 안 제7조에서는 보호자와 아이돌보미, 서비스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명시함.
- 안 제8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시·군, 관계 기관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.

○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무의 위임·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

(안 제9조)

-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의 일부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위임·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해,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 맞춤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임.



- 특히,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일·가정 양립을 바탕으로 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제정 필요성도 타당하다고 보여짐.
  
- 또한,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및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,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추진 근거를 담아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